

서울특별시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

(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1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김정태, 김달호, 김재형,
김제리, 김종무, 김평남,
노승재, 문장길, 박기열,
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
송아량, 양민규, 이상훈,
이정인, 최정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3·1운동은 당시 무단통치기에 침체된 독립운동을 부활시키고,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, 이는 3·1운동의 정치적 실현인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현재의 「대한민국헌법」 전문을 통해 3·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.
- 또한 과거 3·1운동 기념 관련 사료에 따르면 당시 3·1운동의 기념행사는 경사일이자 축제로서의 성격을 지녔는바, 오늘날의 3·1운동 및 3·1절 관련 기념행사는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축제로서의 성격이 축소되고, 추모 또는 만세운동 재현에 집중하고 있음.
- 이에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,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·계승하고,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‘3·1운동 기념사업’에 대해 정의함(안 제3조)
- 라. 3·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3·1운동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3·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7조)
- 바. 3·1운동 기념사업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사. 3·1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3·1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- 아. 3·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헌법」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서울특별시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3·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및 계승하고,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조례는 3·1운동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자유를 선언하여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, 3·1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3·1운동의 자유·평등·평화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3·1운동 기념사업”이란 3·1운동 및 3·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업 및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서 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3·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 및 순국선열의 정신 계승에 대한 올바른 교

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3·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순국선열의 공훈 및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6조(3·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) 시장은 3·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
1. 3·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
2.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축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것
3.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문화·예술 및 선양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

제7조(3·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3·1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3·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3. 3·1운동 기념사업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4. 3·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방안
5. 그 밖에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3·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3·1운동 관련 학술, 출판 및 문화·예술 사업
2. 3·1운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
3. 3·1운동 관련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사업
4.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·관리 사업
5. 3·1절 경축행사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·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3·1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3·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3·1운동기념사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3·1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지원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표창) 시장은 3·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	2021020300000006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김정태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
접수일 : 2021.02.03	
회신일 : 2021.02.05	내용문의 : 02-2180-7942

서울특별시 3.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○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, 학술, 문화사업 비용 ≍ 600,0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, 학술, 문화사업 비용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, 학술, 문화사업 비용
= 지원단가 × 1식
= 120,000천원

※ 참고) 2019년 서울시 3.1운동 및 임시정부 심포지엄-전시회 예산이 240,000천원이었으나
100주년이 아닌 평년도 예산은 절반수준으로 가정

○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 ≍ 49,5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
= (참석수당 × 수당지급 참석인원 × 개최건수) + (업무추진경비 × 참석인원 × 개최건수)
= (150,000원 × 9명 × 6회) + (30,000원 × 10명 × 6회)
= 9,900천원
= 120,000천원

※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고 수당을 받는 위원은 9명이며, 연간 총 6회 개최(2시간 이상)
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

붙임)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(안 제5조(기념사업)제2호 관련) : 기 추진

: 2020년 서울시 보훈단체 지원 예산(3,561,100천원) 중 3.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(100,000천원)와
봉오동전투 100주년 기념사업, C-47기 전시 및 교육, 13도 창의군탑 정비 및 기념사업 지원예산 등 편성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무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